

교직원 정년퇴직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| 2013.4.22 | | 16 | | |
| 2 | | | 17 | | |
| 3 | | | 18 | | |
| 4 | | | 19 | | |
| 5 | | | 20 | | |
| 6 | | | 21 | | |
| 7 | | | 22 | | |
| 8 | | | 23 | | |
| 9 | | | 24 | | |
| 10 | | | 25 | | |
| 11 | | | 26 | | |
| 12 | | | 27 | | |
| 13 | | | 28 | | |
| 14 | | | 29 | | |
| 15 | | | 30 | | |

교직원 정년퇴직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교직원의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년) 교직원의 정년은 각호의 1과 같다.

1. 전임교원 만 65세
2. 직원 5급 이상 만 61세
3. 직원 9급이상 6급이하 만 58세
4. 삭제
5. 실습사무직, 조수 만 50세<개정 2013.4.22.>
6. 기능직 및 고용원 만 58세
7. 조종실기교수 만 60세(원장은 만 64세)
8. 기타 퇴직사유는 필요에 따라 학교내규에 의한다.

제3조 (퇴직발령일) 전조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자는 정년 해당 학기말에 퇴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 혹은 초과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인에게 통고한 후 1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기존 조교에서 실습사무직 직종(명칭)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